■ 지방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40호의4서식] <신설 2019. 12. 31.>

| 관리번호 | - |
|---|---|

# (　　년 귀속)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
## (단일소득-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용)

| 거주구분 | 거주자1 / 비거주자2 |
|---|---|
| 내·외국인 | 내국인1 / 외국인9 |
| 거주지국 | 거주지국코드 |

| ❶ 기본사항 | ① 성명 | | ② 주민등록번호 | |
|---|---|---|---|---|
| | ③ 주소 | | ④ 전자우편주소 | |
| ⑤ 납세지 | | ※ 12월31일(사망한 경우 사망일, 출국의 경우 출국일) 당시의 주소지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명을 시·군·구 단위까지 적습니다. 다만, 납세지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「지방세법」 제95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 | | |
| ⑥ 주소지 전화번호 | | | ⑦ 휴대전화번호 | |
| ⑧ 신고유형 | 35 분리과세(주택임대) | | ⑧ 소득구분 | 32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|
| ⑨ 업종코드 | | | ⑩ 신고구분 | 10 정기신고, 20 수정신고, 40 기한후신고 |
| ❷ 환급금 계좌신고 | ⑪ 금융기관명 | | ⑫ 계좌번호 | |

### ❸ 지방소득세액의 계산

| 구 분 | | 금 액 |
|---|---|---|
| ⑬ 과세표준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⑰ 과세표준란의 금액 | | |
| ⑭ 세율: 「지방세법」 제93조제4항제2호 | | 1.4% |
| ⑮ 산출세액: (과세표준⑬ × 세율⑭) | | |
| ⑯ 세액감면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⑳ ×10% | | |
| ⑰ 결정세액: ⑮ − ⑯ | | |
| ⑱ 가산세액: 무(과소)신고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, 납부불성실란에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에 따른 가산세, 기타란에는 「지방세법」 제99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. | 무(과소)신고 | |
| | 납부불성실 | |
| | 기 타 | |
| | 합 계 | |
| ⑲ 총결정세액: ⑰+⑱(합계란 금액) | | |
| ⑳ 추가납부세액: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6)의 ㉙ ×10% | | |
| ㉑ 납부할세액: ⑲+⑳ | | |

신고인은 **「지방세법」 제95조에**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**「지방세기본법」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.**

년　　월　　일　　신고인　　(서명 또는 인)

**시장·군수·구청장**　　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